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28. 소형준 의원 외 13인 (의안번호 430호)
- 나. 회부일자: 2025. 3.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3.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2조)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정비와 지원기준 확대(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3. 06. ~ 2025. 0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북구 경로당 현황 >

(2025. 2월말 현재)

구분	계	단독	아파트		등록회 원(명)	회장	비 고
			일반	임대			
계	183	64	100	16	5,619	177	※ 설치기준 • 이용인원: 20명 이상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 거실 또는 휴게실 20㎡이상
구립	59	59	0	0	1,943	57	
사립	124	5	100	19	3,676	120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지원대상) 정비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1)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7조2)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기에 지원대상을 법 조문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정비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안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신설

「노인복지법」 제24조3)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해촉, 대상 업무를 명시하여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제1항, 정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정비한 것으로, 제1호~제3호는

2)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23. 5.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조문의 형식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였고, 제9호에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1. 경로당 <u>시설운영비</u>	1. ----- <u>운영비</u>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	2. <u>양곡 및 부식 구입비</u>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3. <u>냉·난방비</u>
4. 경로당 회원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	<삭 제>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u>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u>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노인 인구 및 경로당 이용 인원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을 지역사회내에서 적극 활용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여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비용추계 상세내역 >

1차년도 소요예산 총 104,480천원 (2025년 본예산 기 편성)

· 활동비 102,480천원(70천원×8개월×183명), · 위촉장등 홍보비 2,000천원

2차년도 소요예산 총 153,720천원 (70천원×12개월×183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0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2조)
-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다.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정비와 지원기준 확대(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 안내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1항제1호 중 “시설운영비”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곡 및 부식 구입비

3. 냉·난방비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제8조(중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안내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u>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u>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u>경로당 시설운영비</u> 2. <u>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u> 3. <u>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u> 4. <u>경로당 회원 중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u> 5. ~ 8. (생략) <u><신설></u> 9. (생략) ②·③ (생략) <u>제7조(정산 등) 제6조에 따라</u>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u>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u> <u>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u> ----- ----- ----- ----- -----. 1. ----- 운영비 2. <u>양곡 및 부식 구입비</u> 3. <u>냉·난방비</u> <u><삭제></u> 5. ~ 8. (현행과 같음) 9. <u>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8조(정산 등) 제7조</u>----- ----- ----- ----- ----- -----
---	---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 야 한다. <u>제8조</u> ~ <u>제10조</u> (생략)	----- -----. <u>제9조</u> ~ <u>제11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28. 오중균 의원 외 17인 (의안번호 431호)
- 나. 회부일자: 2025. 3.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3.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중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제30조제2호)
 - “6세 미만” ⇒ “7세 이하”
 - “보육교사” ⇒ “보육교직원”
-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 보조 신설(안 제30조제10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유아의 나이를 6세미만에서 7세이하로 규정하여 실제 보육서비스 적용 대상 나이로 일치시키고,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 성북구 어린이집 시설 현황 >

(2025. 3. 1.현재)

구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시설수	178	91	48	39
보육교직원수	1,805	1,018	528	259

< 성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

(2025. 3. 1.현재)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치료사	기타
1,805	178	1,347	2	3	2	128	1	144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정비

- 2023. 8.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4) 개정·시행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4) 「영유아보육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하여 실제 정책 및 교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를 일치시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정의를 법령상 개정(‘24. 2. 6개정, ‘24. 8. 7시행)사항 으로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영유아”란 <u>6세 미만</u>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 <u>7세 이하</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집”이란 <u>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u> 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u>친권자·후견인</u>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 <u>친권자·후견인</u> , ----- -----.

○ 안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정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5)(비용의 보조 등)개정(‘24. 2.13개정, ‘24.8.14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포괄함**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5)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2024. 2. 13.>

- 비용의 보조대상을 현행 **보육교사** 인건비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정비하였고, 제10호를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육교사 인건비	2. 보육교직원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4. “보호자”란 <u>친권자·후견인</u>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 <u>친권자·후견인</u> , ----- ----- ---

- 그밖에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13조(위탁운영) 등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보육정책 및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나 내용이 적절하고 특별한 위배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1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제30조제2호)

- “6세 미만” ⇒ “7세 이하”
- “보육교사” ⇒ “보육교직원”

나.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 보조 신설(안 제30조제10호)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친권자·후견인”을 “친권자·후견인,”으로 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항 중 “10명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으로, “법인”을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경우”로 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에”를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 및”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10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취소 할”을 “취소할”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영유아”란 <u>6세 미만</u>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 <u>7세 이하</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 <u>어린이집</u> ”이란 <u>보호자의 위 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u>	3. “ <u>어린이집</u> ”이란 <u>영유아의 보 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 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u>
4. “보호자”란 <u>친권자·후견인</u>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 <u>친권자·후견인</u> , -----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 <u>영유아보 육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성북구</u> (이하 “구”라 한다)에 <u>서울특별 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한 <u>10명 이상 20명 이내</u>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10명 이상</u> -----

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
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5. (생략)

③·④ (생략)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
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4
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
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를 결정한다.

③ (생략)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

② -----

----- 「영유아보육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
조제3항 -----

-----.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② -----

----- 위원
회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기간) ① -----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생략)

제21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에서는 영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 ⑦ (생략)

제24조(자문위원회) ① ~ ③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기능) ① -----

----- 영 제13조
에 따른 기능 및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명 이
상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문위원회) ① ~ ③ (현

략) 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의 위탁을 <u>취소</u> 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략) 2. <u>보육교사</u> 인건비 3.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행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라</u> ----- ----- -----. 제28조(위탁의 취소) ----- ----- ----- ---- <u>취소할</u> -----.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 ----- ----- -----. 1. (현행과 같음) 2. <u>보육교직원</u> -- 3. ~ 9. (현행과 같음) 10. <u>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28. 고영옥 의원 외 10인 (의안번호 432호)
- 나. 회부일자: 2025. 3.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3.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고영옥 의원)

가. 제안이유

-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인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24.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정비

“간접흡연”, “금연구역” 등 정의를 정비한 것으로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2024년 금연구역지정·관리 업무지침을,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를 반영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 법 제9조의5----- ----- ----- -----.
--	---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정비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을
현행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확대하여 정비함.

이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2024.12.30.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 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u>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6)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성북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관내 택시 승차대 설치 현황 (총 3개소, 2024년 12월 기준)

연번	위치	지정일	기타
1	동소문로34길 24(돈암동 10-5)	2011-01-30	택시승차대
2	월곡로 106-1(하월곡동 34-44)	2011-01-25	택시승차대
3	종암로 13(종암동 29-47)	2011-01-07	택시승차대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2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병기

1. 제안이유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인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구민
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나.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건강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5”로 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 법 제9조의 5----- ----- ----- -----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

1. ~ 3. (생략) 4. <u>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u> 5. ~ 8. (생략) ② ~ 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u>에 따른 구 관할 버스 정류소</u> <u>및 택시 승차대</u>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28. 김경이 의원 외 9인 (의안번호 433호)
- 나. 회부일자: 2025. 3.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3.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경이 의원)

가. 제안이유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지역주민들이 심야시간(22시~익일1시)에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사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1조의 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의미하며 서울시 전체 38개소, 성북구는 2개소를 운영중임.

<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25. 1월 현재) >

연번	약국명	소재지	운영형태	운영시간
1	모아약국	성북구 화랑로11길 23, 1층(하월곡동)	매주 월 수, 금 운영	22시~ 익일1시
2	온누리민우약국	성북구 돌곶이로22길 49(석관동)	365일 운영	

※ 서울시 전체 38개소 운영 (성북 포함 13개구× 2개소, 12개구, × 1개소)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성북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에게 의약품 등 구매의 편의 제공 및 지역별 균형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함.

○ 안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안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 운영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안 제7조(지원금의 환수)

-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안 제9조(홍보)

-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업무 수행시 근무일, 운영시간 준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운영이 되도록 홍보 규정을 둠.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약사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23.4.18. 신설)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제2항(24.7.12. 신설)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3,5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3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1. 제안이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
약지도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
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의약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2. 28. 이인순 의원 외 12인 (의안번호 434호)
- 나. 회부일자: 2025. 3.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3.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적용범위 (안 제4조)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안 제5조)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3. 06. ~ 2025. 0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으로 한다)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 동법 제5조⁷⁾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2021. 7. 27제정, 2022. 7.28시행>

- 성북구에서는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어,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자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2025. 1. 1. 현재)

수탁기관	센터위치	직원현황	업무내용	대상시설
동덕여자 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북구 장월로 1마길 56 (상월곡동)	총 15명 (센터장 1, 팀장 3, 팀원 11)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 및 교육지원 업무	총 231개소 7,368명 · 어린이집 174개소 5,391명 · 유치원 13개소 745명 · 아동복지시설 44개소 1,232명

※ 어린이급식소 사업대상은 100인미만 영양사 미고용시설로

2022년 258개소, 2023년 243개소, 2024년 231개소로 매년 사업대상이 감소 추세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1조(목적) 정비

근거법령에「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⁸⁾를 추가하였고 대상을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으로, 센터명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정비함.

8)「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u>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안 제2조(정의) 정비

제2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3호에 현행 어린이급식소를 급식소로 변경하여 「어린이식생활법」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른 급식소임을 명확히 하였고 그 외 제4호 위생관리, 제5호 영양관리에 대한 정의를 간결하게 정비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 --이하 “어린이식생활법”----- -----.
2. “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	3. “급식소”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성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u>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u>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u><신 설></u>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신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안 제4조(적용범위) 정비

적용범위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정비함.

○ 안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정비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센터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하였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어린이급식소 관련 사업과 사회복지급식소 사업 내용을 신설하는 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u>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u>위생·안전·영양관리</u>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u>보급·운영</u> <신 설> 3. <u>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지도</u> 4. <u>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u>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 5. <u>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u>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u>위생적 관리</u>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1. <u>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관련</u> ----- 3. <u>위생·영양관리</u> ----- <u>보급</u> 4. <u>시설유형·대상자별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식사지도</u> <삭 제> 2. <u>급식소 위생·영양관리</u> ----- 5. <u>식재료</u> ----- 위생관리 지도점검 6. <u>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u> 7. <u>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u> 가. <u>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u> 나. <u>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u> 8. ----- <u>구청장이 급식소의</u> ---
---	--

○ 안 제6조(지원대상 등) 정비

센터의 지원대상을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른 급식소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였던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21. 7.27 제정하여 시행중인「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을 포함하여 단체급식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업무와 사회복지 급식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센터의 노하우와 전문인력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대상 기관 현황 >

(2025. 1. 1. 현재/ 단위:개소)

합계	기존 (어린이)				확대 (사회복지)						
	소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소계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쉼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북피해장애인쉼터
265	231	174	13	44	34	9	3	18	1	2	1

※ 어린이급식소(상시 급식 제공) : 100명 미만 영양사 미고용 시설

※ 사회복지 시설(상시 급식 제공) : 50명 미만 영양사 미고용 시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4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적용범위 (안 제4조)

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안 제5조)

마.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보건소 보건위생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를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을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성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제1호 중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를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위생·영양관리”로, “보급·운영”을 “보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를 “급식소 위생·영양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를 “식재료”로, “위생적 관리”를 “위생관리 지도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를 “구청장이 급식소의”로 한다.

4. 시설유형·대상자별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식사지도

6.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

7.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u>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u> <u>운영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성북구</u> <u>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u> <u>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어린이</u> <u>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u> <u>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에게</u> <u>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u> <u>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u> <u>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u> <u>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u> <u>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u> <u>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 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 다. 2. “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 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급	제1조(목적) -- <u>조례는 「어린이</u> <u>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u> <u>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u> <u>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u> <u>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u> <u>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u> <u>----- 어린이·</u> <u>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u> <u>-----.</u> 제2조(정의) ----- -----. 1. ----- -----이하 “어 린이식생활법”----- ----- ----- --.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 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식을 제공하는 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성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 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
 -----.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관련 -----

3. 위생·영양관리 -----
 -- 보급

<신 설>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
도·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
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
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4. 시설유형·대상자별 식단 개
발·보급 및 영양·식사지도

<삭 제>

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
--

5. 식재료 -----

-- 위생관리 지도점검

6.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

7.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
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
담 및 정보 제공

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8. -----
-- 구청장이 급식소의 ---

는 사업 <u>제5조(지원대상 등) 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어린이 급식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3. (생략)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 <u><신설></u> ② 구청장은 <u>법 제21조제1항</u>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제6조</u> (생략) <u>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u> 구청장은 <u>제6조</u>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u>제8조 ~ 제10조</u> (생략)	<u>제6조(지원대상 등) ①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② -----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 --. <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u> ----- -- <u>제7조</u>----- -----. ② (현행과 같음) <u>제9조 ~ 제11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3.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24호)
- 나. 회부일자: 2025. 3.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3.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7, 8, 9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위탁법인 협약기간	개소일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호점	일반형	길음로118, 404동 101호 길음뉴타운4단지 (길음1동)	84㎡	20명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1.10.01
					2021.10.01~2025.05.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8호점	일반형	송인로 50 래미안길음센터피스 (길음2동)	106㎡	26명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1.03.01
					2021.03.01~2025.08.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9호점	일반형	보국문로16길 2, 2층 (정릉4동)	90㎡	23명	사단법인 해피퍼플	21.03.01
					2021.03.01~2025.06.30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라 함) 3개소’ 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 5.31~8.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키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키움센터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원 (현원)	종사 자수	위탁법인	25년 사업비 (천 원)
					협약기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7호점	길음로118, 404동 101호 길음뉴타운4단지 (길음1동)	84㎡	20명 (20명)	3명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22,798
					2021.10.01~2025.05.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8호점	송인로 50 래미안길음센터피스 (길음2동)	106㎡	26명 (26명)	3명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192,655
					2021.03.01~2025.08.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9호점	보국문로16길 2, 2층 (정릉4동)	90㎡	23명 (23명)	3명	사단법인 해피피플	190,070
					2021.03.01~2025.06.30	

○ 민간위탁의 적정성

- 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¹⁰⁾에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키움센터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본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¹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고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9)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24
----------	-----

제출년월 : 2025년 3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이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위탁법인 협약기간	개소일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호점	일반형	길음로118, 404동 101호 길음뉴타운4단지 (길음1동)	84㎡	20명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1.10.01
					2021.10.01~2025.05.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8호점	일반형	송인로 50 래미안길음센터피스 (길음2동)	106㎡	26명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1.03.01
					2021.03.01~2025.08.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9호점	일반형	보국문로16길 2, 2층 (정릉4동)	90㎡	23명	사단법인 해피피플	21.03.01
					2021.03.01~2025.06.30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8,9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3.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25. (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3. 4.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425호)
- 나. 회부일자: 2025. 3.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3.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 구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개소의 구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주 소	규모	정원	위탁법인	위탁운영기간	개소일
구립석관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한천로79길 14-14 (석관동)	132㎡	35명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2020.09.01.~ 2025.08.31	12.09.03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운영 일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이하 “돌봄센터” 라 함)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 8.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5년 8월 31일자로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¹²⁾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인 구립 지역아동센터로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원 (현원)	종사 자수	위탁법인	25년 사업비 (천 원)
					협약기간	
구립석관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한천로79길 14-14 (석관동)	132㎡	35명 (35)	5명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329,656
					2020. 9. 1~2025. 8.31	

12)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13)에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례 제11조의214)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두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고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25
----------	-----

제출년월 : 2025년 3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우리 구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개소의 구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주소	규모	정원	위탁법인	위탁운영기간	개소일
구립석관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한천로79길 14-14 (석관동)	132㎡	35명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2020.09.01~ 2025.08.31	12.09.03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운영 일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3.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 ④ 수탁기관은 아동복지관련 사업에 3년 이상의 운영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